

개 장 [] 신고서
[]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개장신고 : 2일 • 개장허가 : 3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화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 장 [] 신고증명서 []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 매장 []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